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현미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‘한국철도시설공단법’이 ‘국가철도공단법’으로 개정(법률 제17460호, 2020. 06. 09. 개정, 2020. 09. 10. 시행)됨에 따라 ‘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’을 ‘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’으로 하고, 기관 명칭을 ‘한국철도시설공단’에서 ‘국가철도공단’으로 수정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 강화 0건

-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: 협의 전

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”을 “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”을 “「국가철도공단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”을 “「국가철도공단법」”으로, “한국철도시설공단”을 “국가철도공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

제6조제3항제2호 중 “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 제23조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”을 “「국가철도공단법」 제23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”으로 한다.

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

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2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

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

⑤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제4호 중 “한국철도시설공단”을 각각 “국가철도공단”으로 한다.

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

⑦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제19호 및 제31조제1항제25호 중 “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”을 “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”으로 한다.

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

제32조제1항제8호 중 “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”을 “「국가철도공단법」”으로 한다.

제4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

제55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

⑨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항제4호 중 “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”을 “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”으로 한다.

⑩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1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

⑪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제1호 중 “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”을 “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

제2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

⑫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

⑬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「국가철도공단법」

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0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

⑮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

⑯ 사망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3항제8호 중 “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”을 “「국가철도공단법」”으로 한다.

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항 중 “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”을 “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”으로 한다.

⑮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

⑮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11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

⑳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6. 「국가철도공단법」

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유관기관 중 “한국철도시설공단”을 “국가철도공단”으로 한다.

㉒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2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6. 국가철도공단

㉓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

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(이하 “국가철도공단”이라 한다)

제2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국가철도공단

㉕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1. 국가철도공단

㉖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국가철도공단법」

㉗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2호, 제10조제4항제2호, 제11조제4항,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2항제2호 중 “한국철도시설공단”을 각각 “국가철도공단”으로 한다.

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국가철도공단

제5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국가철도공단

㉘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「국가철도공단법」

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”을 “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”으로 한다.

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0. 국가철도공단

㉚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7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

㉛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

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18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0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

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</u> 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<u>한국철도시설공단법</u>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설립등기 사항 등) ① 「<u>한국철도시설공단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에 따른 <u>한국철도시설공단</u>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략) ② (생략)	<u>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</u> 제1조(목적) ----- 「<u>국가철도공단법</u>」----- ----- -----. 제2조(설립등기 사항 등) ① 「<u>국가철도공단법</u>」----- ----- <u>국가철도공단</u>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철도정책과	
연락처	(044) 201-3945